

함께,약속

손해사정업무 조사 수수료 동의서

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 9-16조 제 2항 제 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(이하 '손해사정사')의 선임 의사를 통보한 아래의 선임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 및 손해사정사는 본 동의서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DB손해보험(주) 으로부터 지급받는 것과 그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제 1조 (보험계약사항)

상호명	증권번호	계약지명	보험종류명	청구일부

제 2조 (청구사항)

사고일자	상관보험	청구사유	기망금액	청구금액
			11137982	10,55,228.16

제 3조 (관련 법규의 준수 및 업무의 내용)

-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 188조 및 제 189조 등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자 단체가 만든 손해사정표준업무기준에 근거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한다.
- DB손해보험(주)는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관련 법규 및 약관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/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4조 (손해사정 수수료의 지급)

- DB손해보험(주)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상기 손해사정사 선임 수수료 비용 지급을 동의하는 경우 [별첨1] 보험금청구권자 선임 손해사정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- 손해사정사가 DB손해보험(주)의 정정 보완 요청에 대한 미조치, 본 동의서의 준수사항 미이행 또는 거부 시 DB손해보험(주)는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음에 동의한다.
- 손해사정에 대한 보수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한다. 손해사정사는 보수를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수취하면 아니된다. 손해사정사는 DB손해보험(주)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외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이중 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.



함께, 약속

제 5조 (손해배상)

- 손해사정사는 위임 업무 수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DB손해보험(주)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- 손해사정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서 DB손해보험(주)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의 부과될 경우 손해사정사는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.

제 6조 (손해배상보장 예약)

손해사정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하는 예약증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 한다.

제 7조 (손해사정 업무의 양도 금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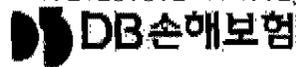
손해사정사는 본 동의서에 따른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DB손해보험(주)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 8조 (분쟁조정)

- 본 동의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있어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.
- 본 동의건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.

구분	성명	연락처
보험금 청구권자	성명	SHEN ZHEHU
	생년월일	65.04.12
	연락처	010-2379-0299
손해사정사 (손해사정법인)	법인명	손해사정도무
	사업자등록번호	528-09-02381
	성명	김도무
	연락처	02-707-1777

※ 증빙서류 : 손해사정사 사업자 등록증 및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
손해사정사 통장 사본
손해사정 업무를 위한 필수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


함께, 약속

#별첨1. 보험금청구권자 선임 손해사정 보수 지급기준

1. 기본 수수료

구분	Claim 유형	수수료
Level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해사망 5천만원 초과 장해청구액 3천만원 초과 	35만원
Level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해사망 5천만원 이하 장해청구액 1천만원 초과~3천만원 이하 고지/통지 위반 및 뇌/심/암 진단적정성(과거력 확인 필요) 1천만원 초과 고의사고/허위사고 의심제보 건 	31만원
Level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구금액 100만 초과 사고다발 및 MR채증 심층조사 대상(거래처불법행위등) 	27만원
Level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구금액 100만 이하 병력조회 확인 의뢰건 	23만원
Level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순서류 징구 대상 건 1. 소견서, 의무기록 CD등, 기타 단순확인 요청건 2. 기타 서류 전달 및 자문동의서 징구건 	15만원

2. 기타 수수료

- 기타수수료는 "DB손해보험" 요청이 있는 건에 한하여 적용되고 각 항목에 대한 상호 협의 하에 기타수수료를 지급한다.

① 고객보호 수수료

11137982 10.55.228.16

구분	내용	수수료
기타서류 징구(제출)	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	2만원
	자문동의서 제출	2만원
	진단병원 소견서 제출	5만원
	채증문답서 징구	2만원

(주) 기타서류 추가수수료 지급대상은 Level 1 위임건에 限

② 보험사기 채증 수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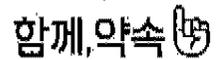
아래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보상담당자와 협의 후 협의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"DB손해보험" 장기 보상지원파트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.

구분	내용	수수료
보험사기 채증	수사기관 진정서 및 소송제기의 결정적 증거 제공	30만원
	브로커의 부정개입 및 불법행위 입증(자인서/녹취)	20만원
	거래처(병원 등)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부정행위(허위입원, 진료기록 조작, 환자 알성 등) 입증을 통해 유관기관 신고	10만원

③ 보험사기 적발 수수료

- 사기적발 확정 또는 당사 기준 법률 위반 성과 입력 완료 時

구분	5백만원 이상	1천만원 이상	2천만원 이상	5천만원 이상	1억원 이상
지급액	10만원	30만원	50만원	80만원	100만원



#별첨1. 보험금청구권자 선임 손해사정 보수 지급기준

3. 기타 부대비용

① 교통비

구분	지급기준
시내교통비	1만원(정액지급)
항공	실비 (Economy)
철도	SRT, KTX (특실제외)
선임	1등실
고속버스 등 기타	실비
업무용 차량	유류비 및 통행료

○ 「산정기준」

- 시내교통비는 손해사정 법인의 본·지점이 속한 지역 내에서 조사가 시행된 경우에 한해 1회한 1만원 정액 지급한다(시외교통비 중복청구 불가)
- 시외교통비는 대한민국내 선임 손해사정 법인의 본·지점이 소재하는 동일 지역을 벗어나 출장한 경우에는 실비 지급한다.(ex. 타사무소 소재지역으로 시외 출장시 비용 지급 불가)
- 같은 市·郡 내 다수의 사고건을 수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교통비를 중복 청구할 수 없다.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2회 이상 교통비를 청구하거나, 다른 날 방문하는 경우 1회로 산정한다. 단, 보험자의 요청이 있거나, 상호 합의한 경우 예외(보고서에 명확히 기재)
- 대중교통비/통행료 증빙영수증등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
-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당사차간 별도로 합의 후에 실비 청구한다.

228.16

○ 「업무용 차량 인정기준」

구분	내용	승인자료
산식	주행거리 X {당요금 ÷ 평균연비}	- 승차권 + 카드매출 전표 - 네이버 「빠른길 찾기」 이미지등
거리기준	네이버 「길찾기」이용 최적거리	
{당 요금	"한국석유공사" 공시기준	
평균연비	9Km/리터	

② 숙박비

4만원(1일당)

출장장소 기준 편도 150KM 이상 /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1일당 지급

※ 증빙자료 첨부(카드매출 전표)해야하며, "DB손해보험"과의 사전협의限

③ 서류발급비

실제 사용 금액 (※ 증빙자료 첨부)

④ 기타 제비용

사고조사에 필요한 기타 비용으로 증빙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실비 지급하며, 통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"DB손해보험"과 협의해야 한다.



함께, 약속

#별첨2. 손해사정 업무를 위한 필수 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서

※ 필수 체크 항목으로 각 동의란에 체크 하십시오.

1. 개인(신용) 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·이용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

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보험금 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등 손해사정업무 수행,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, 손해사정 업무 보수지급

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), 계좌번호 등
- 한국손해사정사회, 금융감독원 등에서 관리하는 손해사정사 등록 및 공시에 관한 정보

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)

2. 개인(신용)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 정보를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정사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..... 동의함

개인(신용)정보 조회목적

- 손해사정사 자격여부 확인

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

- 손해사정사 등록 및 공시에 관한 정보

조회 등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(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)의 개인(신용) 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)

3.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

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

-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손해보험협회
- 업무수탁자 등·보험금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 (보험사고조사업체, 손해사정업체 등)

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손해보험협회 : 보험업법 및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
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수행

제공할 개인(신용) 정보의 내용

- 「개인(신용) 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」의 정보내용(단,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)

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)

4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기의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고유식별정보(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 를 처리(수집·이용, 조회, 제공)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

20²⁶ 3³

동의자 성명: SHEN ZHEHU (인 또는 서명)



함께, 약속

#별첨3. 손해사정 확인 요청사항

구분	요청사항	검토결과
서류 징구	1. 진료 병원 의무기록 징구 2. 의료자문 동의서 징구 3. 현장조사 동의서 징구	
피보험자 면담	1. 발병경위, 병원내원 경위	
 DB손해보험	11137982 10.55.228.16	

※ 보상담당자가 건별 작성 후 손해사정사에게 발송